

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실국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정책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직제규정에 맞게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업무이관에 따른 직위조정
 - 부위원장 1인은 정책관리실장 ⇒ 행정국장(안 제10조제2항)
 -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 ⇒ 정책기획관(안 제10조제3항제1호)
 - 간사를 예산담당관 ⇒ 자치행정과장(안 제10조제5항)
-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국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정책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직제규정에 맞게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정책관리실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,
- 안 제10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
-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정으로 변경하고,
-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 기준에 따라
 - 각호의 1 ⇒ 각호의 어느 하나
 - ~의 규정에 의하여 ⇒ ~에 따라
 - 인 ⇒ 명등으로 변경함.

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실국간 업무조정예 따라 직제규정에

맞게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,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한 것으로 내용 및 용어정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,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조정이 2009년 있었음에도 1년 이상이나 늦게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